

# 광명 제10R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전 반드시 전화 문의로 청약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670-0570)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20.(금요일)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16.(금)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896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정	01월 27일(금요일)	01월 27일(금요일)	01월 27일(금요일)	01월 27일(금요일)	· 현장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법	현장 청약 (10:00 ~ 11:00)	현장 발표 (11:30)	12:00~17:00		
장소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우면동, 호반파크 2관)] ● 청약통장 불필요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우면동, 호반파크 2관)]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2.12.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73-3번지 일원 (광명제10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1개동, 일반분양 493세대(총 1,051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무순위 대상 잔여물량 219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공급 세대수	잔여세대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01	059.9400A	59A	59.9400	25.0639	85.0039	43.6540	128.6579	29.7632	76	48
	02	059.8000B	59B	59.8000	26.0391	85.8391	43.5520	129.3911	30.0556	16	10
	03	074.9200A	74A	74.9200	23.9726	98.8926	54.5638	153.4564	34.6262	11	6
	04	074.7600B	74B	74.7600	23.6464	98.4064	54.4473	152.8537	34.4559	12	10
	05	074.7700C	74C	74.7700	24.1786	98.9486	54.4545	153.4031	34.6458	95	69
	06	084.9600A	84A	84.9600	26.2636	111.2236	61.8759	173.0995	38.9437	72	50
	07	084.9600B	84B	84.9600	26.5836	111.5436	61.8759	173.4195	39.0558	41	26
합 계										323	219

※ 39 및 49타입 청약 경쟁률 미달로 무순위 대상 제외

■ 공급가격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잔여 세대	동호구분	층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60%)						잔금 (30%) 입주 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3-04-06	2023-07-06	2023-10-05	2024-01-04	2024-04-04	2024-07-04	
59A	48	101동1,2,4호 104동1,2호 204동 1호 (최상층)	2층	170,958,000	445,042,000	616,0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184,800,000
		204동3,4,5호	3층	170,958,000	458,342,000	629,300,000	62,930,000	62,930,000	62,930,000	62,930,000	62,930,000	62,930,000	62,930,000	188,790,000
		205동1,3,4,5호	4층	170,958,000	464,942,000	635,900,000	63,590,000	63,590,000	63,590,000	63,590,000	63,590,000	63,590,000	63,590,000	190,770,000

			5~14층	170,958,000	491,442,000	662,400,000	66,240,000	66,240,000	66,240,000	66,240,000	66,240,000	66,240,000	66,240,000	198,720,000		
			15층 이상	170,958,000	498,042,000	669,0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200,700,000
		204동 1호	2층	170,958,000	420,042,000	591,0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77,300,000
			3층	170,958,000	433,342,000	604,30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60,430,000	181,290,000
			4층	170,958,000	439,942,000	610,900,000	61,090,000	61,090,000	61,090,000	61,090,000	61,090,000	61,090,000	61,090,000	61,090,000	61,090,000	183,270,000
			5층	170,958,000	466,442,000	637,400,000	63,740,000	63,740,000	63,740,000	63,740,000	63,740,000	63,740,000	63,740,000	191,220,000		
59B	10	101동3호 204동2호 (최상층) 205동 2호	2층	172,638,000	456,162,000	628,800,000	62,880,000	62,880,000	62,880,000	62,880,000	62,880,000	62,880,000	62,880,000	62,880,000	188,640,000	
			3층	172,638,000	469,662,000	642,30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64,230,000	192,690,000
			4층	172,638,000	476,362,000	649,0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194,700,000
			5~14층	172,638,000	503,462,000	676,100,000	67,610,000	67,610,000	67,610,000	67,610,000	67,610,000	67,610,000	67,610,000	67,610,000	67,610,000	202,830,000
			15층 이상	172,638,000	510,262,000	682,900,000	68,290,000	68,290,000	68,290,000	68,290,000	68,290,000	68,290,000	68,290,000	68,290,000	68,290,000	204,870,000
					2층	172,638,000	431,162,000	603,800,000	60,380,000	60,380,000	60,380,000	60,380,000	60,380,000	60,380,000	60,380,000	181,140,000
					3층	172,638,000	444,662,000	617,300,000	61,730,000	61,730,000	61,730,000	61,730,000	61,730,000	61,730,000	61,730,000	185,190,000
					4층	172,638,000	451,362,000	624,0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187,200,000
					5층	172,638,000	478,462,000	651,10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65,110,000	195,330,000
		74A	6	102동 1,2호	1층	198,891,000	488,109,000	687,0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2층	198,891,000				503,209,000	702,100,000	70,210,000	70,210,000	70,210,000	70,210,000	70,210,000	70,210,000	70,210,000	70,210,000	70,210,000	210,630,000
3층	198,891,000				518,309,000	717,20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215,160,000
4층	198,891,000				525,809,000	724,70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217,410,000
5~14층	198,891,000				556,009,000	754,90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226,470,000
15층 이상	198,891,000				563,609,000	762,50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76,250,000	228,750,000
74B	10	202동 3호 203동 3호	2층	197,913,000	504,087,000	702,0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210,600,000	
			3층	197,913,000	519,187,000	717,100,000	71,710,000	71,710,000	71,710,000	71,710,000	71,710,000	71,710,000	71,710,000	71,710,000	71,710,000	215,130,000
			4층	197,913,000	526,787,000	724,70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72,470,000	217,410,000
			5~14층	197,913,000	556,987,000	754,90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75,490,000	226,470,000
			15층 이상	197,913,000	564,487,000	762,400,000	76,240,000	76,240,000	76,240,000	76,240,000	76,240,000	76,240,000	76,240,000	76,240,000	76,240,000	228,720,000
74C	69	103동 2,3호 105동 2,3호	1층	199,004,000	475,196,000	674,200,000	67,420,000	67,420,000	67,420,000	67,420,000	67,420,000	67,420,000	67,420,000	67,420,000	202,260,000	
			2층	199,004,000	489,996,000	689,0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206,700,000
			3층	199,004,000	504,796,000	703,800,000	70,380,000	70,380,000	70,380,000	70,380,000	70,380,000	70,380,000	70,380,000	70,380,000	70,380,000	211,140,000
			4층	199,004,000	512,196,000	711,20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71,120,000	213,360,000
			5~14층	199,004,000	541,796,000	740,800,000	74,080,000	74,080,000	74,080,000	74,080,000	74,080,000	74,080,000	74,080,000	74,080,000	74,080,000	222,240,000
			15층 이상	199,004,000	549,196,000	748,200,000	74,820,000	74,820,000	74,820,000	74,820,000	74,820,000	74,820,000	74,820,000	74,820,000	74,820,000	224,460,000
84A	50	106동 1,2호 202동 1,2,4호 203동 1,2,4호	2층	223,691,000	585,909,000	809,60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242,880,000	
			3층	223,691,000	603,309,000	827,0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248,100,000
			4층	223,691,000	612,009,000	835,70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250,710,000
			5~14층	223,691,000	646,809,000	870,50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261,150,000
			15층 이상	223,691,000	655,509,000	879,20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263,760,000
84B	26	103동 1,4호 105동 1,4호	2층	224,335,000	585,265,000	809,60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80,960,000	242,880,000	
			3층	224,335,000	602,665,000	827,0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248,100,000
			4층	224,335,000	611,365,000	835,70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83,570,000	250,710,000
			5~14층	224,335,000	646,165,000	870,50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87,050,000	261,150,000
			15층 이상	224,335,000	654,865,000	879,20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263,760,000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당첨자발표 안내

- 당첨자 확인은 추첨 당일 당사 건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 안내가 불가하고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본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청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3.01.27.(금요일) 12:00~17: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3.01.20.(금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20-6772-71	광명 제10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 계약금 납부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된 지정일자에 상기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상기 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예비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일시 및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기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추후 통보 예정)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8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제5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 거주 의무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hobansummit-gm.co.kr))

■ 건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우면동, 호반파크 2관)

■ 홈페이지 : http://hobansummit-gm.co.kr

■ 분양문의 : 1670-0570